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8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신복자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소영철, 신동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이원형, 임춘대,
장태용, 최민규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」

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,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착한가격업소” 표지판
2.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
3. 종량제·쓰레기봉투 지원
4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5.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이용 활성화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유공자 표창)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